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비규범적이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행위자나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판단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규범적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던 국내외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심리학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의 양상이 행위자와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던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계층, 도덕판단, 처벌판단, 비규범적 행위, 위법행위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 02-920-7303, E-mail : hpark@sungshin.ac.kr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회항 사건, 백화점 모녀의 ‘갑질’ 사건 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갑의 횡포’는 비단 우리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수행되었던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보다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Piff, Stancato, Cote, Mendoza-Denton, & Keltner, 2012).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 (socioeconomic status)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분주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기다리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지 않는 등 운전 법규를 위반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의사결정 경향을 보이고 협상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일련의 실험들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윤리성(e.g., Piff et al., 2012), 혹은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친사회성(e.g., Piff, Kraus, Cote, Cheng, & Keltner, 2010)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사회규범에 어긋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어떻게 지각되고 판단되는지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제시해 왔다: 사회규범에 어긋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지각하고 판단하

는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처벌 여부 및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가? 사회규범이나 법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달리 지각되고 판단되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관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들이 어떠한 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비교적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인지 영역의 지식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 시 적정한 형을 토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최승혁, 허태균, 2011).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지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제도가 재판의 공정성 유지와 제고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찬반이 엇갈렸으며, 실제 시행 결과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오호

택, 2011). 그러므로 법률 비전문가인 배심원의 의사 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계층(social class)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판단자, 즉 해당 행위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던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후속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심리학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사회계층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도덕판단과 처벌판단 각각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계층에 따라, 그리고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던 선행연구들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후속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계층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사회계층은 모두 사회범주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인종,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사회범주들이 외부에서 할당되거나 외적으로 주어진 지위(ascribed status)를 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계층은 노력 및 재능과 같은 내적 요인들에 의하여 획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성취된 지위(achieved status)이다(Fiske, 2010). 그간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계층 관련 변수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 연

구문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Cohen, 2009). 그런데 관련 연구문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계층이라는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바, 용어를 둘러싼 혼란을 피하고자 이 두 가지 용어가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되며 경험적으로 어떻게 측정되는 지를 먼저 살펴본다.

본래 지위(status)는 “지정된 행위자(개인, 혹은 사회조직)가 사회체계 내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와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호관계 양상을 규정하는 일련의 역할로 구성”된다(Schooler, 2007, p. 371). 이러한 지위에 대하여, 위신(prestige), 상대적으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자원 획득을 위한 불공평한 기회 및 권력을 기준으로 위계적인 서열을 매길 수 있다. 그리고 지위를 이처럼 위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화를 다루는 사회학자들은 사회계층을 생산수단의 소유 및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나(Kohn & Slomczynski, 1990), 많은 경우 사회적 지위와 사회계층은 거의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서로 바꾸어 사용되곤 한다(Schooler, 2007).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상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 즉, 재정적 자원, 교육 기회에의 접근, 사회기관(예컨대, 명성 있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 고급 사교클럽)에의 참여와 같이 삶에서 개인이 누리는 물질적 여건을 측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Oakes & Rossi, 200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측정된 값들이 결합되어 어떻게 단일한 사회계층

측정치가 산출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등, 객관적인 측정치들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도 제기되었다(Kraus, Piff, & Keltner, 2009). 따라서 연구자들은 최근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objective socioeconomic status)로 포착되지 않는 주관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는 대학, 공동체, 혹은 국가 등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개인이 스스로 접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계층 지위(social class rank)를 나타낸다.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단지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일 뿐이며(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Kraus et al., 2009), 특히 사회계층 간 건강의 차이에 있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명되지 않는 변량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요컨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질적 자원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 속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한 지위에 기초하여 정의되며(Kraus et al., 2012),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각각이 고유하게 포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의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경향을 보인다(e.g., Cote, Piff, & Willer, 2013; Kraus & Keltner, 2013; Kraus et al., 2009; Stellar, Manzo, Kraus, & Keltner, 2012).

종합하건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계층은 여러 연구문헌에서 거의 유사한 의미로 서로 바꾸어 쓰이거나 함께 쓰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결한 기술을 위하여 '사회경제

적 지위'로 통칭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도덕판단

누군가가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해를 끼치는 않았으나 불쾌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때,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지 여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Haidt, Koller와 Dias (1993)는 브라질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 한 곳과 가장 빈곤한 도시들 중 한 곳,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연구참가자들과 낮은 연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제시되었는데, 각 이야기 속의 행위자는 불쾌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였으나, 해로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 역시 아니었다(예: 한 여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국기를 잘라 화장실 청소용에 사용함, 한 남성이 매주 마트에서 구입한 죽은 닭과 성교를 한 후 요리하여 먹음). 연구참가자들은 이야기 속의 행위자가 해당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그러한 행동이 문화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답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규범 위반에 대한 응답이 현저히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브라질인들과 미국인들 중에서는 다수가 제시된 행동들을 금지시키거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던 반면,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미국인들과(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 이기는 하였으나) 브라질인들은 대다수가 금

지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주어진 행동들이 문화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낮은 연구참가자들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제시된 행동들을 도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 간주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선호나 사회관습의 문제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로운 의도에서 비롯되지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해를 끼치거나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거나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는가에 두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신성성(divinity)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원리에 두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Haidt et al., 1993; Shweder, Much, Mahapatra, & Park, 1997). 도덕의 문제들은 모든 문화에서 ‘해를 끼쳤는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와 같은 물음과 결부된다고 인지발달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연구하였던 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Turiel, Killen, & Helwig, 1987), 문화심리학자들은 도덕의 영역이 문화에 따라 다르며, 많은 경우 해, 권리 및 정의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주장하였다(Haidt et al., 1993). 특히, Shweder와 동료들(1997)은 도덕성의 판단 기준을 해, 권리 및 정의에 두는 서구적 ‘자율성의 윤리(ethics of autonomy)’뿐만 아니라, 의무, 존경, 권위에 대한 복종 및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가에 두는 ‘공동체의 윤리(ethics of community)’와 역겹거나 인간의 영적인 본

성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가에 두는 ‘신성성의 윤리(ethics of divinity)’ 역시 사람들이 도덕성에 관하여 사고하고 논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하였다. 요컨대, 첫째, 도덕적 사고와 담론을 지배하는 위의 세 가지 규칙들은 문화에 따라 다른 정도로 정교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서구에서는 도덕의 영역이 주로 자율성의 윤리에 국한되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도덕의 영역이 이보다 넓다는 것이다.

Haidt와 동료들(1993)의 연구는 위와 같은 문화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사회나 문화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도덕의 문제로 간주하는 영역과 도덕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규칙이 다름을 시사한다. 실제로, 브라질과 미국 모두에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낮은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윤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공동체의 윤리는 보다 많이 언급하였다. 이처럼 Haidt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문화차보다 두드러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간 차이가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도덕판단에 관여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증폭되거나 감소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후속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한 연구는 공리주의적인(utilitarian) 도덕판단을 내리는 정도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공감(empathy)에 기인함을 보여준다(Cote et al., 2013).

공리주의적 판단이란 손익분석을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판단은 친사회적 행동과 구분된다. 비록 양자 모두 타인의 복지를 강화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리주의적 판단은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행위 대상 자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친사회적인 행동은 반드시 최대 대수의 최대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이다(Cote et al., 201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본능적인(visceral) 도덕적 직관,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빠르고 자동적이며 평가적인 감정은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e.g., Zhong, 2011).

Cote와 동료들(2013)은, 본능적인 도덕적 직관이 결과론적 계산과 배치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 대하여 공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고 갈등 도덕 딜레마와 저 갈등 도덕 딜레마를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고 갈등 도덕 딜레마는 육교 아래의 철로에서 작업 중인 다섯 인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체격이 큰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 달려오는 열차를 멈추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이다(육교 딜레마). 이처럼 해를 입히는 방식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려할 때에는 본능적인 도덕적 직관이 강하게 일어난다. 반면, 저 갈등 도덕 딜레마에서는 다섯 인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한 명의 인부가 서 있는 쪽으로 전차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판 스위치를 누를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이(트롤리 딜레마), 피해가 덜 직접적이며 이미 존재하는 위

협이 제 3자를 향하도록 방향을 바꿈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 갈등 딜레마에서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이 본능적인 도덕적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약하다.

연구 결과, 약한 도덕적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내리는 비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강한 도덕적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육교 딜레마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높은 연구참가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후속 실험에서,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 자신의 자원을 잃게 될 사람에게 공감하도록 유도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공감 유도 조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통제 조건과는 달리 공리주의적 판단을 하는 정도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연구 3).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감 저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공리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위의 연구들을 통하여 도덕판단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와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율성의 윤리를 따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율성의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나 신성성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은 윤리원칙들을 따른다. 그리하여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 권리 및 정의의 문제만을 도덕판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의무, 권위에 대한 복종, 사회적 역할, 인간의 영적인 본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도덕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 추구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공감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수가 누릴 이익과 소수가 입을 피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공감적 반응 정도가 이러한 판단 차이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위법행위란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로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무엇이 위법행위인지 명문화(明文化)되어 있기 때문에 법 외적인 요인들이 위법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견 낮아 보인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다양한 법 외적인 요인들이 위법행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아래에서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던 연구들과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던 연구들을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Bornstein과 Rajki(1994)는 생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모의재판(구체적으로,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약 10년 동안 노출된 후 이전에 없었던 난소암에 걸린 원고의 사례)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인종,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학생 신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 신분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연구참가자의 인종에 따라 평결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백인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소수인종 연구참가자들은 원고에게 우호적인 방향의, 즉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학생 신분이 아닌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평결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하게,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을 내린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교육을 받은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일관되게, 고소득 집단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저소득 집단의 연구참가자들 중 더 많은 수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인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을 보이는 인종적 배경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도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 여부와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와 함께 그 원인을 검증하였다(Kraus & Keltner, 2013).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사회계층 범주들에 관하여 본질주의 이론(essentialist lay theory), 즉 사회계층이 유전적인 기초를 가진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신념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즉, 보복적 사법제도)보다 범죄자의 갱생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를 덜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변하였다. 즉, 연구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돈, 교육 및 직업적 영예를 지닌 사람, 혹은 가장 적은 돈, 교육 및 직업적 영예를 지닌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각각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후, 상점에서 돈을 훔친 사람과 자신의 연봉 인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기록을 조작한 사람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읽고, 각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보복적 처벌과 회복적 처벌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낮은 지위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사회계층 범주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을 더 강하게 옹호하며, 회복적 처벌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질주의 신념을 보다 옹호하게 만드는 동시에 회복적 처벌을 덜 지지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과 처벌판단 간의 인과적 영향 관계를 시사한다.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판단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수행되었던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피고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배심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예컨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피고들은 지위가 높은 피고들에 비하여 보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Gleason & Harris, 1975).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사회범주 정보(예컨대, 인종적 배경 등)나 범죄의 전형성(즉, 위법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구성원들이 통상 저지른다고 여겨지는 범죄인가)과 공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해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Lerner, 1980) - 즉 세상이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이 얻을 만한 것을 얻으며 자신이 얻은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 수준, 그리고 위법행위자와 판단자가 동일한 사회집단(예컨대, 인종,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 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에서 처벌판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단독으로 고려되었기보다 다른 변수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1)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 여부나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2)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 집단 소속에 대한 정보나 범죄의 전형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및 (3)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 등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을 개관한다.

Freeman(2006)은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이 지닌 공정세상 믿음과 함께 살인사건에 관한 처벌과 책임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건설 노동자 대 사무직 노동자 대 관련 정보 없음), 교육수준(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함 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함 대 관련 정보 없음) 및 변호인 선임 능력(국선변호인 대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함 대 관련 정보 없음)을 통해 조변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조건에 따라 높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인물로 설정된 피고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나리오를 읽고 평결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평결에 대한 확신도, 피고가 죄를 지은 정도, 피고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비난 받아야 하는 정도, 피고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도 및 피고에게 내려져야 하는 형벌의 정도에 대해 답하였다. 분석 결과, 평결 및 평결에 대한 확신도에 있어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죄를 지은 정도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

우 죄를 지은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패턴은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공정세상 믿음이 약한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건에 비하여 낮은 조건에서 보다 가혹한 선고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책임판단에 있어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연구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피고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피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공정세상 믿음이 낮은 연구참가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 연구의 결과는 살인사건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이 함께 작용하여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던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종, 범죄의 전형성 및 피고와 모의 배심원, 즉 연구참가자의 인종적 배경 합치 여부를 조변하였다(Willis 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구체적으로,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높음 대 낮음), 피고의 인종(멕시코계 미국인 대 유럽계 미국인) 및 범죄 유형(횡령 대 자동차 절도)을 달리하였을 때, 유럽계 미국인 연구참가자들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멕시코계 미국인이나 유럽계 미국인 피고에 비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멕시코계 미국인 피고에게 더 많은 유죄 평결을 내리고 더 긴 선고와 더 높은 책임 평정을 하였다. 그러나 멕시코계 미국인 연구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 피고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범죄(즉, 절도)를 저지른 멕시코계 미국인 피고에 대한 편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럽계 미국인 피고에 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중간 대 낮음), 인종(멕시코계 미국인 대 유럽계 미국인) 및 가중처벌 가능한 상황인가 여부(가중처벌 가능한 상황 대 관련 정보 없음)가 모의 배심원들의 사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던 다른 연구에서도, 배심원 역할을 하였던 연구참가자들(모두 유럽계 미국인들)은 모든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며 피고가 멕시코계 미국인이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더 빈번하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사형을 더 빈번하게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범죄에 대하여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Espinoza, 2009). 이 연구들의 결과는, Freeman(2006)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 수준, 위법행위자와 판단자가 동일한 사회집단에 속하는가 여부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다단한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한 연구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전형적인 범죄인 횡령을 소재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거나 낮게 조변하여 제시하고 양형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형판단에 있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최승혁, 김범준, 김시엽, 2009). 그러나 이 연구에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범죄인 횡령(박희찬, 김혜숙,

2010)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전형성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목하여, 최승혁과 허태균(2011)은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중 어느 쪽에도 전형적이지 않은 우발적 상해 치사 사건이 담긴 시나리오를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형판단이 달라지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범죄의 전형성을 직접 조변하였을 때에는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와 관련하여, 최승혁과 허태균(2012)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높음 대 낮음), 범죄의 전형성(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인질 강도) 및 판단자의 공정세상 인식(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이 양형판단, 도덕적 비난, 범죄의 원인 귀인,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 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공정세상 기대, 즉 공정한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과 상호작용하여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전형성과 관계없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에는 공정세상 기대 수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위가 높을 때에는 공정세상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더 긴 양형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범죄의 전형성과 관계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 비하여

높은 범죄자를 도덕적으로 더 많이 비난했고 범죄에 대하여 보다 성향귀인을 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의 전형성 및 공정세상 믿음 간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질 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믿음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이 강할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인 범죄자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인 범죄자에게 더 강한 양형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 그리고 공정세상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던 Freeman(2006)의 결과와 일견 배치되는 것을 보인다. Freeman(2006)의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살인 범죄에 대하여,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들에 비하여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죄를 지은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패턴은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두 연구들 간의 차이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추후 연구 과제

위에 개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도덕판단 및 처벌판단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도덕판단이 달라지는 근본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입는 소수에게 공감적 반응을 덜 보이며, 그리하여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더 많이 내리는 것이라면(Cote et al., 201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탐색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을 덜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수에게 덜 공감하며,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보다 가용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다 독립적이고 덜 의존적이며, 다수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피해 당사자의 정서, 지각 및 동기를 상상할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은 자발적 조망수용의 결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덜 공감하게 하며, 더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보다 강한 개인적 통제감(sense of personal control)을 가지고 있다(Kraus et al., 2009; Lachman & Weaver, 1998; Snibbe & Markus, 2005). 또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 및 일련의 사회적 결과들(예컨대, 의대 입학, 낮은 수입,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 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그리고 타인의 정

서를 지각하는 데에 있어 상황적 관점보다 기질적 관점을 취하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Kraus et al., 2009). 이처럼 삶에서 얻는 결과들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은 공정세상 믿음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공정세상 믿음을 가진 정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소수에게 낮은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도덕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즉, 잠재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탐구 역시 필요하다. 만약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과 같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에게 도덕적 귀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 동일한 사회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이 더 큰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한 연구에서는 행위자가 공인(公人)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위법행위(음주운전)를 하였을 때 더 강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하며, 더 긴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됨을 알 수 있었다(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비록 이 연구에서 선정하였던 공인들(정치인, 공무원, 배우, 프로게이머 및 회사원) 모두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분류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이들은 비교적 풍부한 재정적 자원, 평균 이상의 교

육연한 등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징들을 상당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들에게는 지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이 기대되며, 그로 인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사회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더 큰 비난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사회적 존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의 기반인 물질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 대해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 Kraus et al., 2012). 그러므로 판단의 준거가 명문화되어 있는 위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녔다고 하여 반드시 더 큰 비난이 가해지지 않는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더불어,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지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단자의 인지양식이나 동기 등이 단독으로, 혹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들(예컨대, 정상참작이 가능한가 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상황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Bowman, Kitayama, & Nisbett, 2009; Kraus et al., 2009; Varnum, Na, Murata, & Kitayama, 2012), 정상참

작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될 때 사회경제적 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양형판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는 지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법행위자와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민사적인 판단과 형사적인 판단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관하였던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형사 처벌을 고려해야 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바, 민사 판단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후속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는 의미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인지각 및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최승혁과 허태균(2012)의 연구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횡령 범죄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질렀을 때 공정세상 기대가 높은 판단자들일수록 더 강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한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인질 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공정세상 기대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인 대상의 연구(Freeman, 2006)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살인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저질렀을 때 공정세상 세상 믿음이 강한 판단자들일수록 죄를 지은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위법행위자가 소속된 집단에 전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전형적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관련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

은 두 연구의 공통점이자 다른 선행연구(박희찬, 김혜숙, 2010)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왜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한국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전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미국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전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성이 더 크다고 지각하는가? 두 연구들 간의 차이는 두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지각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는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는 의미가 다른 사회나 문화에서 연구된 바와는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각하고 서로의 비규범적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신념과 기대 등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리는지 후속연구를 통하여 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27-49.

오호택 (2011). 법원 이야기. 살림출판사.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17.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 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13-125.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127-140.
- 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공인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 67-84.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Bornstein, B. H., & Rajki, M. (1994). Extra-legal factors and product liability: The influence of mock juro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uitions about the cause of an injur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2*, 127-147.
- Bowman, N. A., Kitayama, S., & Nisbett, R. E. (2009).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elf, attribution, and attention: Socially expansive individualism of middle-class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880-893.
- Cohen, A. B. (2009). Many forms of culture. *American Psychologist, 64*, 194-204.
- Cote, S., Piff, P. K., & Willer, R. (2013). For whom do the ends justify the means? Social class and utilitarian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490-503.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 109-134.
- Espinoza, R. K. E. (2009). Juror bias and the death penalty: Deleterious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ase circumstance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Fall*, 33-41.
- Fiske, S. T. (2010). Interpersonal stratification: Status, power, and subordinat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Vol. 2, pp. 941-98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 2379-2394.
- Gleason, J. M., & Harris, V. A. (1975).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similarity as determinants of judgments by simulated jur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175-180.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613-628.
- Kohn, M. L., & Slomczynski, K. M. (1990). *Social structure and self-dir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Poland*. Oxford, UK: Blackwell.
- Kraus, M. W., & Keltner, D. (2013). Social class rank, essentialism, and punitive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 247-261.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 546-572.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63-773.
- Leam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NY: Plenum Press.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315-1344.
- Oakes, J. M., & Rossi, R. H. (2003). The measurement of SES in health research: Current practice and steps toward a new approa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 769-784.
- Piff, P. K., Kraus, M. W., Cote,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771-784.
- Piff, P. K., Stancato, D. M., Cote, S., Mendoza-Denton, R., & Keltner, D. (2012). Higher social class predicts increased unethical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 4086-4091.
- Schooler, C. (2007).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The relevance of social structure to cultural psychology.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370-388).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Shweder, R. A., Much, N. C., Mahapatra, M., & Park, L. (1997). The "big three" of morality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and the "big three" explanations of suffering. In A. Brandt & P. Rozin (Eds.), *Morality and health* (pp. 119-169). New York, NY: Routledge.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03-720.
- Stellar, J. E., Manzo, V. M., Kraus, M. W., & Keltner, D. (2012). Class and compassion: Socioeconomic factors predict responses to suffering. *Emotion*, 12, 449-459.
- Turiel, E., Killen, M., & Helwig, C. C. (1987). Morality: Its structure, function, and vagaries.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 155-24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rnum, M. E. W., Na, J., Murata, A., & Kitayama, S. (2012). Social class differences in N400 indicate differences in spontaneous trait in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1, 518-526.
- Willis Esqueda, C., Espinoza, R. K. E.,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 181-199.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Zhong, C.-b. (2011). The ethical dangers of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 1-25.

1 차원고접수 : 2015. 02. 21.

심사통과접수 : 2015. 03. 20.

최종원고접수 : 2015. 03. 23.

Socioeconomic Status: A Review of Its Role in Moral Judgments and Punitive Judgments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e non-normative behaviors or illegal acts perceived and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ctor's or the perceiver's socioeconomic status (SES)? The goals of this article are to review past research on the role of SES in moral judgments and punitive judgm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pecifically, it is first reviewed how socioeconomic status has been conceptualized and measur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Then, past research on the effect of SES on moral judgments and its potential mechanisms is reviewed. Past work on how and why punitive judgments vary depending on both the perpetrator's and the juror's SES is also reviewed.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made and implications that this line of research has in the Korean society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lass, moral judgment, punitive judgment, non-normative behavior, illegal act